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 및 제3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자료·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주 및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에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과원 소재지 주소, 과종 및 품종, 재배면적, 수령 등 과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전정 등 농작업 참여 인력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기타 약제방제확인서, 농작업일지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과
2. 배
3. 그 밖에 장미과 식물

제3조의7(예방 교육의 운영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① 법 제33조의5제2항

에 따라 식물재배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대학 등
2. 교육내용: 병해충 예방을 위한 농업인 현장 실천사항 등
3. 교육방법: 집합교육, 영상교육
4. 교육이수 시간: 연 1회 이상 교육 참여하되, 연 1시간 이상 이수
5. 교육이수 확인: 이수한 기관의 수료증 또는 교육 확인서

② 예방 교육의 실시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3조의5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의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⑦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⑧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을 말한다.

1. 과수화상병
2.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제6조제1항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의 실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제7조 중 “별표”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1] <신 설>

병해충 발생 및 확산방지 예방 수칙(제3조의7제3항 관련)

1. 과수화상병 등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이나 병해충을 발견하였을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2. 과수원에 주기적으로 이병 증상이 있는지 자가 예찰을 실시해야 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예찰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과수원 출입 전·후 작업복이나 신발, 모자, 장갑, 농기구 등의 외부 접촉 부위에는 소독액을 살포하여 소독을 해야 한다.
4. 농작업시 작업 도구는 나무가 바뀔 때마다 소독 후 사용해야 한다.
5. 꽃을 손으로 따내거나 적과·봉지씌우기 등으로 유과를 만질 경우 손도 수시 소독해야 한다.
6. 작목별 등록된 병해충 예방 약제를 시기적절하게 살포해야 한다.
7. 병 잠복처(궤양 등) 발견시 제거 후 약제 도포로 감염을 차단해야 한다.
8. 묘목류(접수·대목 포함)는 출처가 분명하고 「종자산업법」의 생산·판매이력제에 따라 생산·판매된 건전 묘목을 사용해야 한다.

■ 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2] <신 설>

손실보상금 감액기준(제4조2제5항 관련)

* 아래 감액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도 방제비는 전액 지급한다.

신고	1. 법 제30조2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손실보상금 60%감액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가.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으나 사전제거 등을 위하여 표본을 채취하여 RT-PCR (실시간 유전자 진단) 분석한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나. 발생주율이 전체 재배주수 대비 10%미만인 경우)
역학 조사, 분포 조사 거부 또는 방해	2. 법 제31조의5 또는 법 제31조의6을 위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법 제33조제1항에 따 른 예찰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손실보상금 40% 감액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다.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교육 이수	3.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농장주가 외부농작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손실보상금 20% 감액
작업 도구 소독	4. 법 제33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작업도구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한 경우 : 손실보상금 5% 감액 * 소독용품(도구) 구입내역과 사용기록이 없거나 소독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예방 약제 살포	5. 법 제33조의5제3항에 따라 품목별 등록된 예방약제 살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손 실보상금 10% 감액
궤양 제거	6. 법 제33조의5제3항에 따라 동절기 궤양제거 시기에 궤양제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손실보상금 5% 감액 * 과수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이 발생한 식물에 궤양이 발견된 경우 동절기 궤양제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건전 묘목	7. 신규조성 및 재식재 과원에 묘목식재시 법 제33조의5제3항에 따라 「종자산업법」의 생산·판매이력제에 따라 생산·판매된 묘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손실보상금 5% 감액

방제 명령	8. 법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식물의 재배제한 또는 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손실보상금 100% 감액 나. 법 제36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명령을 위반한 경우 : 손실보상금 60% 감액 다. 법 제3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물품, 농기구 또는 시설의 소독·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손실보상금 20% 감액
재식재 과원 발생	9. 동일한 과원에서 동일한 병해충이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다만,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근 발생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모든 발생 횟수를 합산(최근 발생일을 1회로 포함) 가. 2회 발생 : 손실보상금 20% 감액 나. 3회 발생 : 손실보상금 50% 감액 다. 4회 발생 : 손실보상금 80% 감액
중복 위반	10. 중복위반시 감액비율은 각 위반 감액 비율의 합계로 산정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제9호 가목 제외) 합계한 감액비율 적용으로 손실보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 중 높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7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거나 보관한 경우	법 제50조 제2항제1호			
1)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중		10	20	40

기준을 위반한 경우				
2)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송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	200	400
3)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4)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보관 중 기준을 위반한 경우		100	200	400
나. 법 제7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법 제50조 제3항제1호	25	50	100
다. 법 제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목록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의2	50	100	300
라.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1호	200	500	1,000
마.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법 제50조 제3항제2호	10	50	100
바.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지체한 경우	법 제50조 제3항제3호			
1) 이사물품을 수입하여 신고를 지체한 경우		10	30	90
2) 이사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검사신청을 지체한 경우		100	200	300
사.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자가 없거나(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장소에 반입된 경우(식물검역대상물품이 반입된 이후 소유자가 없게 되거나 소유자가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법 제50조 제3항 제3호의2	100	200	300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아.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3항 제3호의3	10	30	90
자.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	법 제50조 제3항제4호	10	20	40
차.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2항제2호			
1) 휴대하여 수입되거나 탁송 또는 우편으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10	20	40
2) 그 밖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400
카. 법 제13조에 따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2호			
1) 격리재배 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짜까지 격리재배지(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동시키지 않은 경우		25	50	100
2)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 격리재배명령과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	200	400
3) 삭제 <2017. 11. 28.>				
타.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변조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2호	100	200	400
파. 법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2	50	100	300
하. 법 제19조의2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50조	150	250	400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2항 제2호의2			
거.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2항제3호	100	200	400
너. 법 제30조에 따른 검역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소독·폐기 등의 명령이나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3호	500	750	1,000
더. 법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2항제4호			
1)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식물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	20	40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제병해충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	200	400
3)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병해충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150	250	400
러. 법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3	50	100	300
머. 법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4	50	100	300
버.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5	50	100	300
서.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3항 제4호의6			
1) 작업도구를 소독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한 경우		100	200	300
2) 품목별 등록된 예방약제 살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	200	300

3) 동절기 궤양제거 시기에 궤양제거를 하지 않은 경우		<u>100</u>	<u>200</u>	<u>300</u>
4) 「종자산업법」에 따라 생산·판매된 묘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u>100</u>	<u>200</u>	<u>300</u>
언.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 또는 식물검역관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50조 제1항제4호	500	750	1,000
전. 법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0조 제3항제5호	100	200	3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6(자료·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주 및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과원 소재지 주소, 과종 및 품종, 재배면적, 수령 등 과원 현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전정 등 농작업 참여 인력의 연락처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기타 약제방제확인서, 농작업 일지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② 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과		
		2. 배		
		3. 그 밖에 장미과 식물		
<u><신 설></u>		제3조의7(예방 교육의 운영 및 예		

방 수칙의 준수 등) ① 법 제33조의5제2항에 따라 식물재배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대학 등

2. 교육내용: 병해충 예방을 위한 농업인 현장 실천사항 등

3. 교육방법: 집합교육, 영상교육

4. 교육이수 시간: 연 1회 이상 교육 참여하되, 연 1시간 이상 이수

5. 교육이수 확인: 이수한 기관의 수료증 또는 교육 확인서

② 예방교육의 실시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3조의5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

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 ①
~ ④ (생략)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신설>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략)

칙”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손실보상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 제5항-----

-----.

⑦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⑧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다음 각 호의 병해충을 말한다.

1. 과수화상병
2.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

-----.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 11. (생 략)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u>별표</u>와 같다.	<u>3의2.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의 실시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u> 4. ~ 11. (현행과 같음)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u>별표 3</u>-----.
--	--